

『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방안 확대 시행으로 이용객 편의 증대 및 효율적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료 등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보편적 산림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시설사용료 징수방안 확대(안 제4조)
 - 전자결제 시스템(신용카드) 도입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소하천정비법」, 「지방세법」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 -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자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, 수입금 입금 규정을 정비, 모든 시설 사용료는 다음날 입금하도록 개정, 휴양림 운영·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